

영등포구의회
제 195회 제1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16. 6. 21.

社 會 建 設 委 員 會
專 門 委 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1. 경 과

의안 제147호로 2016년 6월 2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과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변경된 법조항을 수정하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 보험료 지원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원대상을 차상위계층에서 저소득주민으로 변경
(안 제명, 제1조, 제2조제1호, 제3조)

나. 저소득주민의 정의(안 제2조제1호)

다. 지원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이 청구한 계좌로
일괄 지급(안 제6조제2항)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급여의 종류)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8조(장기요양보험료의 징수)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 (2016. 4. 28. ~ 5. 18) :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과 「국민건강보험법」 의 개정으로 맞춤형급여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임.

○ 주요 내용을 보면

- 지원대상을 차상위계층에서 저소득주민으로 용어의 명칭을 변경하고 저소득주민의 정의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1)기준중위소득 100분의 50 이하인 자로 규정함.
-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시기를 지원 실시로 변경하여 선정된 지원대상자의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지사장이 청구한 계좌로 일괄 지급토록 신설함.

- 본 개정조례안은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보험료 지급방법 조항을 신설하는 등 개정된 상위법령에 따라 정비하려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됨.

1) 통계청이 공표하는 통계자료의 가구 경상소득(근로·사업·재산·이전 소득을 합산한 소득)의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가구규모에 따른 소득수준의 차이를 반영하여 가구규모별로 산정한 소득

관 련 법 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급여의 종류) ①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계급여
2. 주거급여
3. 의료급여
4. 교육급여
5. 해산급여(解産給與)
6. 장제급여(葬祭給與)
7. 자활급여

②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는 수급자의 필요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4.12.30.>

③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이하 "차상위자"라 한다)에 대한 급여는 보장기관이 차상위자의 가구별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차상위자에 대한 급여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삭제 <2014.12.30.>
[전문개정 2012.2.1.]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보험료) ① 공단은 건강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총당하기 위하여 [제77조](#)에 따른 보험료의 납부의무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

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한다. 다만, 가입자의 자격을 매월 1일에 취득한 경우에는 그 달부터 징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험료를 징수할 때 가입자의 자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는 변동되기 전의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한다. 다만, 가입자의 자격이 매월 1일에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한다.

④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보수월액보험료: [제70조](#)에 따라 산정한 보수월액에 [제7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

2. 소득월액보험료: [제71조](#)에 따라 산정한 소득월액에 [제7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의 100분의 50을 곱하여 얻은 금액

⑤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세대 단위로 산정하되,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월별 보험료액은 [제72조](#)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부과점수에 [제73조제3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8조(장기요양보험료의 징수) ① 공단은 장기요양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에 총당하기 위하여 장기요양보험료를 징수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보험료(이하 이 조에서 "건강보험료"라 한다)와 통합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공단은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구분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③공단은 제2항에 따라 통합 징수한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각각의 독립회계로 관리하여야 한다.